

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4년 1월 23일(화) 15:00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4. 1. 23.

기획재정부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1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2
(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2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3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4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5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6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7
(9) 보험모집인의 수당 환수액 성격 명확화	7
(10)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8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8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9
(1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10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11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12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13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4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5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6
(2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17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18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18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19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0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20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1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2
-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3
-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23
-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4
-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25

< 국제조세 >

-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
납부세액분 포함 26
-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 27

2. 법인세법 시행령

-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28
-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29
-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30
- (4)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31
 - ②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32
 -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33
- (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34
- (6)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35
 -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 36
 -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 37
-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38
-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39
-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40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41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42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43
(13)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44
(1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44
(15)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	45
(16)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46
(1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47
(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4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50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신설	51
(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52
(4) 일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53
(5) 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54
(6)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55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56
(2)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57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58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58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59
(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60
(5)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1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62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62

(8)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63
(9)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	64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65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65
(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	66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66
(1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67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68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 관리 완화	68

7.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70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	71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72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73

8. 인지세법 시행령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74
-----------------------------	----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	75
-------------------------------	----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76
(2) 외국인기술자 근로자 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77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78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79
(5)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80
(6) 근로·자녀장려세제	81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81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82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83

< 법인세제 >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84
(2)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84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85
(4)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86
(5)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87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88
(6)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89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90
(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91
(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91
(10)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92
(1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93
(1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94
(1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95
(14)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	96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97
②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	98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	99
(1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100
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101

(17)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102
(18)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	103
(19)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	104
(20)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105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106
(22)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107
(2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108
(24)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110

< 증여세 · 양도소득세제 >

(1)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111
(2)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	112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113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114
(5)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	115
(6)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116

< 금융세제 >

(1)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117
(2) 특수목적펀드예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	118
(3)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119
(4) 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	120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	121
(6)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122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123
(8)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124
(9)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125

< 부가가치세제 >

(1)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26
(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126
(3)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	127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128
-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129
-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130
- (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합리화 131
- (5)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132
- (6)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133
-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134
- (8)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135
- (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135
- (1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136
- (11)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137
- (12)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138
- (13) 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 확대 139
-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140
- (1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140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141
-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 142
- (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143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144
-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145
-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146
- (4)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147
- (5)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148

(6)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49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149
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150
③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151
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152
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153
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154
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155
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156

14.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157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구체화	158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159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160
(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161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162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163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164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165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165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166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	167
④ 전송요구 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	168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169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70
(10)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171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172
(1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173
(13)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74

(1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175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75
②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176
(1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177

15. 기타 개정사항

* 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FTA관세법 시행령,
WTO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78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179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180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181
(5)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182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183
(7)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	184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185

1. 소득세법 시행령

(1)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소득령 §10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마) >

- 「사립학교법」 §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 한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금액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50만원

<개정이유>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p> <p>○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p> <p>-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p> <p>*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p> <p>- 산업인력공단 직원</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령 §17의3, §18)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어, (5)라) >

-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p>*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p>-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p>*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p>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p> <p>①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p> <p>②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p> <p>*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p>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p>*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p>

〈개정이유〉 출산·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 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input type="checkbox"/>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방식 변경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input type="checkbox"/>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개정이유〉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input type="checkbox"/>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10)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손금 및 필요경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 인건비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p style="font-size: small;">*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p>

<개정이유>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11)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소득령 §5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 <p style="font-size: small;">*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p>

<개정이유>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1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소득령 §80①(3)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령」 §39①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아래 요건(①+②+③+④)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증세법」 §16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②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③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위탁자가 ①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p><input type="checkbox"/>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 (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 + 위탁자와 「국기법 시행령」 §1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1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소득령 §80③,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결산보고서: 행정안전부장관 ② 수입명세서: 관할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제출기한 연장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 (좌 동)

〈개정 이유〉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p>□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 한도</p> <p>○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p> <p>-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p> <p>*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p> <p>○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p> <p>○ (일반기부금)</p> <p>-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p> <p>*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p> <p>○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p> <p>- (좌 동)</p> <p>○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p> <p>○ (일반기부금)</p> <p>-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p> <p>*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소득령 §8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례기부금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①+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 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① 5만원 → 8만원 - (좌 동) ②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p>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령 §108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도) 연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

(1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2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 가격 상향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좌 동)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 조특령 §117의3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의료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15%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p><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p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7의6, 법인령(제15970호, '98.12.31.) 부칙 §14, 법인령(제18706호, '05.2.19.) 부칙 §1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p> <p>*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p> <p>○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p> <p>*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p> <p>○ 계산서 발급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 <th>'19</th> <th>'20~'21</th> <th>'22~'23</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도매인</td> <td>서울</td> <td>85</td> <td>90</td> <td>95</td> </tr> <tr> <td>서울 외</td> <td>65</td> <td>70</td> <td>75</td> </tr> <tr> <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 <td>85</td> <td>90</td> <td>95</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 '23.12.31.까지</p>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p> <p>○ (좌 동)</p> <p>○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사업연도 지역</th> <th>'19</th> <th>'20~'21</th> <th>'22~'23</th> <th>'24~'25</th> <th>'26</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도매인</td> <td>서울</td> <td>85</td> <td>90</td> <td colspan="3">95</td> </tr> <tr> <td>서울 외</td> <td>65</td> <td>70</td> <td>75</td> <td>80</td> <td>85</td> </tr> <tr> <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 <td>85</td> <td>90</td> <td colspan="3">95</td> </tr> </tbody> </table> <p>○ '26.12.31.까지</p>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24~'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사업연도 지역		'19	'20~'21	'22~'23	'24~'25	'26																																									
중도매인	서울	85	90	95																																											
	서울 외	65	70	75	80	85																																									
시장도매인(법인)		85	90	95																																											

〈개정이유〉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

< 법 개정내용(소득법 §86) >

-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라도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 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소액부징수 예외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소득령 §18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시 제외 	<input type="checkbox"/>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p style="font-size: small;">*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p>

<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소득령 §212의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의2)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손자녀 추가
- (공제금액) 둘째 자녀에 대해 공제세액 5만원 상향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개정이유>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적용시기> '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25)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3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개정이유>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p> <p>*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p> <p>① 변호사 등 전문직</p> <p>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p> <p>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p> <p>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p> <p>⑤ 골프장운영업, 음식점업 등 기타 업종</p> <p>* 전체 125개 업종</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의무발행대상 확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p> <p>*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그외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블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p> <p>**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p>

<개정이유> 소득과약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52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 + 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input type="checkbox"/>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좌 동) ③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개정이유>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령 §15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 §88) >

-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주택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154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취득일~양도일 	<input type="checkbox"/> 계산방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개정이유>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소득령 §154⑫·§159의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p> <p>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p> <p>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p> <p>⇒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p> <p>*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p> <p>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p> <p>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p> <p>③ 최연장자</p>	<p><input type="checkbox"/> 판정기준 합리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p>

〈개정이유〉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p> <p>○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p> <p>○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p> <p>○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p>	<p><input type="checkbox"/>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p> <p>○ (좌 동)</p> <p>○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p> <p>① 소형 신축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p> <p>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p> <p>○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p> <p>○ (좌 동)</p>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 국제조세 >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소득령 §11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p> <p>○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p> <p>-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추가></p>	<p><input type="checkbox"/>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p> <p>○ (좌 동)</p> <p>-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가 조세조약 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p>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23.8.8. 이후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2)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의5 신설)

—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5 신설) >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등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기준보상*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국외 지배주주의 범위, 주식기준보상 개념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 임원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①(1)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원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 외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②(1), (2) <p><input type="checkbox"/> 주식기준보상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개정이유> 외국법인 임직원 등에 대한 소득과약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input type="checkbox"/>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목적신탁·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수탁자 과세요건) ①~③에 해당 ①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로서 수익배분의 유보나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② 수익자가 2이상일 것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과세요건 합리화 ① (좌 동) <삭 제> ③ (좌 동)
<input type="checkbox"/> (위탁자 과세요건)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삭 제> <삭 제> ③ (좌 동)

<개정이유>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이월결손금 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p> <p>* [조특법 §74①]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p>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

(4)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과세 제외 ○ (예외) ①~④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이익 ②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③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 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④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 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⑤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17)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차익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②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p><input type="checkbox"/>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차익 -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②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p><input type="checkbox"/>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재평가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p><input type="checkbox"/>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p>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p>□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p> <p>○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p>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5)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법인령 §17의2⑤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2②) >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재평가적립금 및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 ○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6)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11, §1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p> <p>○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p> <p>○ (좌 동)</p> <p>○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p>
<p><input type="checkbox"/>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p> <p>○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p> <p>○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p>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실제 보험료·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비용으로 인식한 사업 연도에 손익 인식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 기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p><input type="checkbox"/>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p>*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 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p> <p><input type="checkbox"/>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p> <p><input type="checkbox"/>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p>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법인령 §63·§19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발생률] ○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input type="checkbox"/>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input type="checkbox"/>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중소·중견기업 ○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내국법인 ○ (좌 동)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법인령§2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고용부담금</p>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

(9)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법인령 §23)

현 행	개 정 안
<p>□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p> <p>○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추 가></p> <p>○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p> <p>-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p>	<p>□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p> <p>○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p> </div> <p>○ (좌 동)</p> <p>-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손금불산입액 = $A \times \frac{B-1}{B}$</p> <p>A: 지급한 손해배상금 B: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p> </div>

<개정이유>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0)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 §50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input type="checkbox"/> 업무전용보험가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 요건 강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p style="text-align: center;">*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p>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적용시기> '24.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6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p> <p>○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p> <p>-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대상법률 추가</p> <p>○ (좌 동)</p> <p>- 「산업기술혁신촉진법」</p>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법인령 §6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손익의 귀속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p>*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 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산의 취득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 등의 합계액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input type="checkbox"/>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14)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령 §7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p style="margin-left: 40px;">*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p>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5)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법인령 §86의3 · §120의4)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5 · §100의16 · §100의18) >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배당을 받은 주주등·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p> <p>○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p> <p>○ (좌 동)</p> <p>-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p>

<개정이유>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인령 §120의18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범위 <input type="checkbox"/>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령 §120의17④, §120의22, §120의26)

- <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⑤) >
-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받음
 -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을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p> <p>①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p> <p>=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p> <div style="background-color: #e0f0ff;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 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div> <p>②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p> <p>=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p> <p style="text-align: center;">× $\frac{\hspace{10em}}{\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p> <p>*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p> <p>③ 결손금 공제·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①의 금액 + ②의 금액</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p> <p>①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p> <p>=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p> <p>②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p> <p>= 조정 연결산출세액 ×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p> <p>*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p>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법인령 §159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p> <p>○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p> <p>○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p><input type="checkbox"/>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p> <p>○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개정이유〉 법령 명확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반환특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p>*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p>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상증령 §46)

—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p><input type="checkbox"/>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p> <p>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p> <p>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가산세 면제 범위</p> <p>①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p> <p style="margin-left: 20px;">-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p> <p style="margin-left: 20p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p> <p>② 납부지연가산세</p> <p><input type="checkbox"/>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① × ②</p> <p>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p> <p>② 1일 10만분의 22</p>

<개정이유> 수정신고 등 미이행 시 제재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의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자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input type="checkbox"/> 업종유지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input type="checkbox"/>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p>*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p>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p>*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p>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상증령 §38·§41의2)

현 행	개 정 안
<p>□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p>□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①, ② 중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p> <p>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p> <p>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p> <p>-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개선</p> <p>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p> <p>② 평가방법 개선</p> <p>- (좌 동)</p> <p>-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p>

<개정이유>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중부령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추 가></p>	<input type="checkbox"/> 합산배제 주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개정이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종과배제 주택 추가(중부령 §4의3)

현 행	개 정 안
<p>□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p> <p>○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주택 유형 추가</p> <p>○ (좌 동)</p> <p>○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p> <p>① 소형 신축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p> <p>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p> <p>* 1) 면적: 전용면적 85m²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p>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사업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직권등록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input type="checkbox"/>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담보신탁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좌 동) -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

<개정이유> 신탁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부가령 §30(4)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경우로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특례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④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p>* 용역의 완료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p>

<개정이유> 해상운송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하는 의료보전 용역의 대상 확대(부가령 §35(1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전 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정신건강 증진사업등을 위탁 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p><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의료보전 용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전 용역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전사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6①(8)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면세하는 교육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산학협력단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p>

<개정이유> 출산·보육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1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연면적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 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면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한정)을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토지의 임대 <p style="text-align: right;">* 토지 임대 범위는 기존 규정 적용</p>

〈개정이유〉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령 §42(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저술·음악·무용·배우· 가수·감독·직업운동가 등 ○ (요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면세요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이유〉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합리화

(8)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번호인의 국선번호 등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외국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면제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이유>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부가령 §69⑬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시 한국전력거래소(중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특례 사유 추가 ○ (좌 동) ○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등을 공급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중개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용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확대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부가령 §71의2⑬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폐업 ○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세액공제의 거래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 조특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거래증빙서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판매대행·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서류 <p style="font-size: small;">*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p>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부가령 §8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 포함 ○ (좌 동)

<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부가령 §91의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p> <p>*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납부</p> <p>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한정)</p> <p>② 수출비중·수출액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p>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p> <p>④ 최근 2년간 관세·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p>⑤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p> <p>⑥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input type="checkbox"/>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⑥ 3년간 → 2년간</p>

〈개정이유〉 납부유예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 발급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input type="checkbox"/>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

(2)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개소령 §19의3, §3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차의 요건 및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300만원 한도 내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5년 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자가 5년 내 사망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에서 차량 소유권의 이전 ▪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 자녀의 사망 ▪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

<개정이유> 면세 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영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input type="checkbox"/>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p style="margin-left: 20px;">※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width: fit-content;"> <삭 제> </div>

<개정이유>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주세령 §3, 별표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맥주 제조시 제조원료 ① 발아된 맥류, 홉 ②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기타재료 * 보리, 밀, 쌀, 옥수수, 귀리, 호밀, 수수, 감자, 전분 등 ③ 첨가제 (아스파탐, 스테비올 배당체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맥주 제조시 허용원료 추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div> ④ 빵(밀가루, 가공유지, 이스트, 물 등으로 만들어진 것), 다량어포, 굴

〈개정이유〉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절차</p> <p>* 제조된 주류의 수량이 자동으로 표시 되는 측정기계 - 자동계수기 사용시 납세증지 부착의무 면제</p> <p>① (주류제조자의 신청)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p> <p>②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 승인 여부 통지</p>	<p><input type="checkbox"/> 신청 및 승인기간 연장</p> <p>① 7일 전 → 10일 전</p> <p>② 5일 이내 → 7일 이내</p>

〈개정이유〉 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41)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 ○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시음주, 주류교환권을 승인 없이 무상제공 ③ 주류·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수수하는 행위 	<p><input type="checkbox"/> 주류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의제판매면허자 추가 ① 장려금·할인·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금품·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좌 동)

〈개정이유〉 주류 거래시 금지행위 합리화

8. 인지세법 시행령

(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 §2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도급문서 <추 가>	<input type="checkbox"/>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 (좌 동) ○ 「소방시설공사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제73조제2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비과세 대상 추가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현물보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조문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6.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16의2, §16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 요건</p> <p>* ① (법 §1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② (법 §18의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③ (법 §18의3)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p> <p>○ 과세연도 종료일 (12.31)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p> <p>*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p>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p> <p>○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p>

〈개정이유〉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8의2)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하는 비과세 규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
- 구체적인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적용 배제되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적용기한) '26.12.31.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컴퓨터학원 ○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 <input type="checkbox"/>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① 폐업·해산, ② 가입자 사망 ③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④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⑤~⑧의 사유가 추가될 예정 <input type="checkbox"/> 공제금 지급 또는 중간지급(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과세 ① ~ ④ (좌 동) ⑤ 자연재난으로 영업 불가 ⑥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⑦ 6월 이상의 입원치료 ⑧ 희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과세 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input type="checkbox"/> 공제부금 납입월수 ÷ 12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공제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근속연수 산정방법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중간정산 이후의 납입월수 ÷ 12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4.6.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근로·자녀장려세제

①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의2)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28, §100의29) > —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소득요건) 홑벌이·맞벌이가구 4,000만원 → 7,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조특령 §100의4, §100의5, §100의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부양자녀, 중복신청, 홀별이가구 판단 우선순위</p> <p>○ 부양자녀 중복 시 판단기준 적용 순서</p> <p>- ①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 ③총급여액 많은 자 → ④산정금액 많은 자 → ⑤직전에 수급 받은 자</p> <p>○ 장려금 중복신청, 홀별이가구 판단시 적용 순서</p> <p>- ①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총급여액 많은 자 → ③산정금액 많은 자 → ④직전에 수급 받은 자</p> <p><input type="checkbox"/> 위 순서로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자, 홀별이가구 여부 결정</p>	<p><input type="checkbox"/> 판단 우선순위 변경</p> <p>○ 부양자녀 판단 적용순위 변경</p> <p>- ①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 ②총급여액 많은 자 → ③산정금액 많은 자 → ④직전에 수급 받은 자</p> <p>○ 장려금 신청자, 홀별이가구 판단 적용순위 변경</p> <p>- ①총급여액 많은 자 → ②산정금액 많은 자 → ③직전에 수급 받은 자</p> <p><input type="checkbox"/> 위 순서로 결정하되,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p>

〈개정이유〉 중복신청 등 발생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조특령 §121의2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금액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제 >

(1)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관계기업	<input type="checkbox"/>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표시금액 ○ (좌 동)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2)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 등 제외 대상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p> <p>○ 13개 분야* 258개 기술</p> <p>*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p> <p>○ 14개 분야 270개 기술</p> <p>- (분야) 방위산업 신설</p> <p>- (기술) 신규 15개, 확대 8개</p> <p>▪ (신규) 15개</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 기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에너지·환경(3개)</td> <td>대형원전 제조기술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Non-coding 교시기술</td> </tr> <tr> <td>첨단소부장(5개)</td> <td>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td> </tr> <tr> <td>탄소중립(3개)</td> <td>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td> </tr> <tr> <td>방위산업(3개)</td> <td>추진체계 기술 등</td> </tr> </tbody> </table> <p>▪ (확대) 8개</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미래형자동차(1개)</td> <td>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td> </tr> <tr> <td>바이오·헬스(2개)</td> <td>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td> </tr> <tr> <td>에너지·환경(2개)</td> <td>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td> </tr> <tr> <td>로봇(1개)</td> <td>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td> </tr> <tr> <td>탄소중립(2개)</td> <td>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분야	세부기술																								
에너지·환경(3개)	대형원전 제조기술 등																								
로봇(1개)	Non-coding 교시기술																								
첨단소부장(5개)	나노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3개)	암모니아 발전 기술 등																								
방위산업(3개)	추진체계 기술 등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자동차(1개)	자율주행 사고원인 규명기술 → 운행기록 추가																								
바이오·헬스(2개)	혁신형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 → 제조기술 추가 등																								
에너지·환경(2개)	친환경 원전해체 기술 → 후행 핵주기 기술로 확장 등																								
로봇(1개)	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 → 안전등급 기준 등 추가																								
탄소중립(2개)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 항공유 추가 등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p> <p>○ 7개 분야 62개 기술*</p> <p>*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p> <p>○ 7개 분야 66개 기술</p> <p>- (기술) 신규 4개, 확대 1개</p> <p>▪ (신규) 4개</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 기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디스플레이 (1개)</td> <td>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소 (3개)</td> <td>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td> </tr> <tr> <td></td> <td>수소환원제철 기술</td> </tr> <tr> <td></td> <td>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td> </tr> </tbody> </table> <p>▪ (확대) 1개</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술 범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기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1개)</td> <td>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td> </tr> </tbody> </table>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분야	세부기술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수소 (3개)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등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조특령 §11의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의4)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시 해당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 (종전)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 주식등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 ① 또는 ②</p> <p>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p> <p>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p>	<p><input type="checkbox"/> 법 개정에 따른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 정비</p> <p>① 평가기관 평가금액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p> <p style="font-size: small;">* 취득 주식등이 출자총액의 50%(경영권 확보시 30%)기준을 최초로 충족하는 사업연도</p> <p>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 ×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p>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 금액 상향 (조특령 §11의3③·§11의4④)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금액*) Ma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 조항 정비(조특령 §12의2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법인</p> <p>* 벤처기업등 출자 관련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13)가 적용되는 내국법인 제외</p> <p>① 벤처투자회사</p> <p>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p> <p>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p> <p>④ 기금운용법인등</p>	<p><input type="checkbox"/> 제외대상 추가</p> <p>①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100px; margin: 10px 0;"></div> <p>○ (좌 동)</p>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22의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6) >

<p><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①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정요건을 충족한 영상콘텐츠에 대한 ②추가공제 신설</p> <p>* ① (종전) 대 3% / 중견 7% / 중소 10% → (개정) 대 5% / 중견 10% / 중소 15%</p> <p>②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대·중견 10% / 중소 15%</p> <p>○ 구체적인 추가공제 세부요건은 시행령에 위임</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요건 (①, ② 모두 충족)</p> <p>①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80% 이상</p> <p>②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p> <p> a)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p> <p> b)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비율 80% 이상</p> <p> c)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p> <p> d) 주요 IP* 중 3개 이상 보유</p> <p>* 「저작권법」에 따른 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저작재산권</p>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2의11)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의8) >

<input type="checkbox"/>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3% 세액공제
--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input type="checkbox"/> 중복지원 적용대상 배제 <input type="checkbox"/>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제작사)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input type="checkbox"/> 출자금액·비용의 판단시점 <input type="checkbox"/> 동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 <input type="checkbox"/> (환산식) (1년 미만 근로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임금) ÷ (해당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 × 12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근로소득금액, 평균임금	<input type="checkbox"/>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금액

<개정이유>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근로자* : 1명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특수관계인 등 제외 -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을 각각 1명으로 계산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는 육아휴직자는 제외)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0.5명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근로자 : 0.75명 * ①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③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 시 휴가자와 대체인력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계산(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한정하여 적용)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운용의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조특령 §6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어업소득)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어로어업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input type="checkbox"/>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3,0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어로어업·양식어업 외 소득)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 월수 ÷ 12)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시행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대상소득 명확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 소득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배당소득 전액 소득세 면제)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배당소득 분리과세)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p>*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p><input type="checkbox"/> 감면 등 소득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p>

〈개정이유〉 감면 등 대상 소득 명확화

(13)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p> <p>○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p> <p>①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자</p> <p>②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은 자</p> <p>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p> <p>④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 및 재창업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지정 납부기한 연장</p>	<p><input type="checkbox"/> 특례 적용대상 확대</p> <p>○ 재기중소기업인 확대</p> <p>○ (좌 동)</p> <p>⑤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용자를 받은 자</p> <p>○ (좌 동)</p>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3) >

내국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허용

*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신청 등 ○ 과세표준신고 시 손실보상금익금불산입명세서를 함께 제출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5 · §100의16 · §100의18)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조특령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제한*의 예외 적용대상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 개인이 아닌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조특령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결손금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취급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 *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결손금) 동업자는 배분받은 결손금을 소득·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른 결손금으로 취급 * 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시 소득금액·결손금 구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
<p><input type="checkbox"/> 결손금 배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 동업자) 배분 불가 ○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시 결손금 배분 제한 규정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결손금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소득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조특령 §104의28)

현 행	개 정 안
<p>□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동업기업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 방법</p> <p>○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신청 방법 보완</p> <p>○ (좌 동)</p> <p>-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p>

<개정이유>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① 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조특령 §100의32⑨)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증가금액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 증가없음 : 임금증가액 ② 고용·임금 모두 증가 : 기존근로자 임금증가액* × 1.5 + 신규근로자 임금증가액** × 2 ③ 청년 및 당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증가시 추가 공제 : 해당 임금증가액 × 2 (②, ③ 중복 산입 불가) ○ 상시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p>*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26의4) 규정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증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 사업 연도의 임금*지급액 증가액 <p>* 소득세법상 근로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액 산정기준 일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식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임금소득 산정기준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조특령 §100의32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미환류소득 : ㉠ 또는 ㉡를 선택하여 산정</p> <p>㉠ 투자포함방법 = [기업소득 × 70% - (투자액 + 임금 증가액 + 상생협력 출연금액 × 300%)]</p> <p>㉡ 투자제외방법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출연금액 × 300%)]</p> </div> <p>○ (기업소득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등</p> <p>○ (기업소득 차감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 등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p><input type="checkbox"/>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합리화</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개정이유> 미환류소득 과세 관련 산정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15)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5) >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 해외자원 직·간접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
 - * ①광업·조광권 직접 취득, ②외국법인의 지분 취득, ③해외자회사를 통한 투자
 - 세액공제 대상 투자, 출자범위 및 세액공제액 추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출자 또는 투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서 ①, ②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②광구 개발·운영 목적 설립 ○ (투자) 외국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직접 출자한 외국법인에 한정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내국인*의 상환기간 5년 이상 금전대여 투자 -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내국인*과 공동으로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를 보유한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추징세액 범위: ① +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액공제액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이전·회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 $\frac{\text{이전·회수된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text{총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 -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액 전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1」 추징대상 일수 × 2」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세액공제 신청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2」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조특령 §104의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24) >

-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허용
-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업종요건 상향입법 및 완화</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상향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유사성 판단 기준, 세부절차는 산업부장관이 고시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9)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등 규정 (조특령 §104조의30)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3) >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시 매년 대여금 기말채권잔액의 10%까지 손금 인정
 -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대여금의 범위,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신청절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현지법인 ○ 국내건설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금을 지급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지주회사가 출자지분의 90%이상 보유하는 해외건설사 포함 <input type="checkbox"/> 특례가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금 및 그 이자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로 파견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채권 <input type="checkbox"/>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본잠식*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결손금이 순자산 시가보다 큰 경우이거나, 순자산 평가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② ①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가능 확인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조특령 §116의2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전기통신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2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1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 식료품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제외 - 음료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 음료 제조업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22)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의21 등)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17·19)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신규 추가

○ 적용지역, 투자·고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p> <p>○ (적용지역)</p> <p> ① 기업도시개발구역</p> <p> ② 지역개발사업구역 등</p> <p> ③ 여수해양박람회특구</p> <p> ④ 새만금투자진흥지구</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창업기업 투자·고용요건)</p> <p>- (연구개발업) 투자금액 5억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p> <p>- (물류·유통업) 투자금액 10억원, 상시근로자 15명 이상</p> <p>- (제조업 등) 투자금액 20억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p> <p>○ (개발사업 투자요건)</p> <p> 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적용지역 확대</p> <p>○ (적용지역)</p> <p>○ (좌 동)</p> <p>⑤ 평화경제특구</p> <p>○ (좌 동)</p>

<개정이유> 평화경제특구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16의36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33)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 제도 신설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업종,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 범위, 서비스업 정의,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추정세액 계산 방법,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감면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p><input type="checkbox"/> 투자누계액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광업권 등)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은 제외 ○ (청년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중 15~34세(병역이행 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근로자 <p><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p> <p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p>

서비스업 정의

-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의 수 감소 시 추정세액 계산방법

-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추가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 중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

* 청년,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1,500만원

감면 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시행규칙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기획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

<적용시기> '24.1.1. 이후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4)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30⑦)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6⑥)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

*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적용 제외 지출액 <input type="checkbox"/>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 * (조특령 §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등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증여세 · 양도소득세제 >

(1)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조특령 §27의6·§68)

—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6·§71) > —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하고,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 벌금형의 범위 및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벌금형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인해 받은 벌금형 ○ 회계부정의 경우: 이사 등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등으로 인해 받은 벌금형* <p>*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p> <p><input type="checkbox"/>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① × 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역형·벌금형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 ② 1일 10만분의 22

<개정이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범위 등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조특령 §63⑭·§64⑪)

현 행	개 정 안
<p>□ 농지등을 농·어업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이월과세 특례 적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거주) ¹⁾농지등 소재 시·군·구, ²⁾과 연접한 시·군·구, ³⁾농지등으로부터 30km 이내 ○ (자경기간) 4년 이상 <p>-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자경기간 요건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자경기간 판정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p>- (좌 동)</p> <p>-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p> <p style="font-size: small;">*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제조업, 숙박업 등: 1.5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0.75억원</p>

<개정이유>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조특령 §6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 ○ (요건) ❶ & ❷ & ❸ ❶ 직접 경작한 토지 ❷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 ❸ 종전·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 (감면율) 100%	<input type="checkbox"/> 대상 명확화 ○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 (좌 동)

〈개정이유〉 양도세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 명확화

(4) 경영희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67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70의2) >

- 농업인의 경영희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 환급* 대상에 농업인의 상속인과 축사용지도 포함
 -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직접 경작·환매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중
-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환매한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자경 농지등 양도세 특례의 적용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희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등* 환매 시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 (환급신청) 농업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 매매·환매계약서 사본 제출 ○ (자경기간) 환매한 농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 시 임차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100% 감면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의 양도세 환급신청 방법, 축사용지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 계산방법 규정 ○ 상속인이 양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임차기간 내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여 축사용지 양도세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이상 직접 축산 시 양도세 100% 감면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희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조특령 §7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p> <p>*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대토보상 받을 경우 양도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p> <p>○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 + 이자상당액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매금지 위반 -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 <p>○ 대토보상과 현금보상(10% 감면)의 감면세액(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의 차액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미기재 등 - 해당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증여 또는 상속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토를 증여받거나 상속이 개시 되는 분부터 적용

(6)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7)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34) >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특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지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 산입 또는 양도세 납부
-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의 종류,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사업 폐지의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대상 사업용 부동산 :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데이터센터 <input type="checkbox"/> 과세이연 대상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방법 $\text{양도차익상당액} = \text{양도차익}^* \times \frac{\text{특구내사업용부동산취득가액}}{\text{수도권사업용부동산양도가액}}$ <p>* 단, 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p> <input type="checkbox"/>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내 부동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 폐지로 간주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세제 >

(1)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 확인서* 발급</p> <p>*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p> <p>○ 발급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관리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리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사 등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주체 확대</p> <p>○ (좌 동)</p> <p>-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p>

<개정이유> 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2)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p> <p>○ (적용대상)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p> <p>○ (소득공제) 출자금액의 10%</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적용기한) '25.12.31.</p>	<p><input type="checkbox"/>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p> <p>* 특수목적에 대한 60% 이상 투자 의무만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는 없음 (「벤처투자촉진법」 §35)</p> <p>○ (좌 동)</p> <p>○ (좌 동)</p> <p>- 다만,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아래 산식에 따름</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액 ×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10%</p> <p style="text-align: center;">*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p> </div> <p>○ (좌 동)</p>

<개정이유> 벤처투자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령 §43의8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창업자 등*이 벤처기업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 **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재투자 요건) 본인보유 주식의 30% 이상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50%이상 재투자 ○ (재투자 기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일*부터 1년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반기말부터 2개월 내 ○ (적용기한) '26.12.31.	<input type="checkbox"/> 재투자기한 연장 ○ (좌 동) ○ 1년 이내 → 2년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4)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조특령 §84의4, §93의6)

— < 법 개정내용(조특법 §87의7, §91의20) > —

-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등 가입자가 다른 적격펀드에 전환 가입시 의무가입기간(3년) 내 해지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
- 전환 가입의 구체적인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p> <p>* 공모리츠·상장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전환가입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p> <p>① 기존 펀드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적격펀드(동일 계좌 유지)에 가입</p> <p>② 기존 펀드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적격펀드에 납입</p> <p>③ 기존 펀드와 다른 적격펀드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p>

<개정이유>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전환가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4.4.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조특령 §93의4)

현 행	개 정 안
<p>□ ISA 편입대상인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범위</p> <p>*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p> <p>**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ISA 편입 허용</p> <p>○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p> <p>-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 ISA 편입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중견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p> <p>-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 ISA 편입 당해연도 매출액 (다음연도 3월에 확정)</p>	<p>□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p> <p>○ (좌 동)</p> <p>-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 전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p> <p>-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p> <p>▪ 매년 1~3월 중 ISA 편입시 : 전년연도 이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p>▪ 매년 4~12월 중 ISA 편입시 : 직전 3개연도 매출액 평균</p>

〈개정이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대상 K-OTC 주식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대상 <input type="checkbox"/>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input type="checkbox"/> 최소 가입기간 완화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마련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 * 의무가입기간(5년) 내 중도해지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파산신고 등 ○ 가입자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추 가>	<input type="checkbox"/>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좌 동) ○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의 출산 포함)

<개정이유>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8)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령 §93의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4) >

저축지원 금융상품*을 가입·연장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 소득 기준연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설>	<input type="checkbox"/>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 기준연도 ○ (원칙) 직전연도 소득 적용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 적용 * 국세청장은 매년 6~7월 기간 중 직전연도 소득 확정 매년 5.31 이전에 '직전연도 소득 확정일'을 고시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1.1.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저축 등의 소득요건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

(9)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요건(조특령 §116의38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38) >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9% 분리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p><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60% 이상</p> <p style="margin-left: 20px;">*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p> <p><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자산의 범위(①+②+③+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사용권 (다만,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제외) ② 특구 개발을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③ 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 ④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입주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특구 이전기업 또는 특구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li style="margin-left: 40px;">* 산업부장관이 “입주예정기업”으로 확인한 중소·중견기업도 포함 - (채권투자)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발행일 취득* <li style="margin-left: 40px;">* 유통 중인 채권의 취득은 제외 - (주식투자) 입주기업 설립시 자본금 납입 및 입주기업이 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시 해당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제 >

(1)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령 §106⑦(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산림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전자수입인지 업무 위탁기관 등 43개 대상 열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조특령 §109의2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외국인관광객이 공급 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호텔업 	<input type="checkbox"/> 환급 대상 호텔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 (범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지원 확대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조특령 §112의6②(6)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 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및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 확인서 발급내역 ○ 면세유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단속내역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자료 제출 범위 위임 근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 인가 허가 면허내역 등 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개정이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서 ○ 국세환급금통지서 ○ 신고안내문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서류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장
<input type="checkbox"/>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고지서 ○ 국세환급금통지서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서류 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7.1. 이후 서류를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국기령 §9의3③·§9의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정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실장(위원장) ○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정부위원 요건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정부위원 지명 등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위원장(지명자)이 철회 ○ 법제처·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해당 기관장(추천자)이 철회 	<input type="checkbox"/> 지명 철회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장관(지명자)이 철회 ○ (좌 동)

〈개정이유〉 국세예규심 위원들의 전문성·대표성 제고 등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명·추천·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령 §9의3⑫, §63의17⑬, §66⑥)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위원 제척 기준</p> <p>①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 (과거 조력자도 포함)</p> <p>②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과거 친족도 포함)</p> <p>③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p> <p>④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청구·심판청구에 관여한 경우</p> <p>⑤ 최근 5년 내 대상처분(세무조사 포함)이나 당사자 관련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한 경우</p> <p>⑥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에 현재 속하거나 최근 5년 내 속하였던 경우</p> <p>⑦ 그 밖에 당사자·조력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제척 기준 합리화</p> <p>○ (좌 동)</p> <p>○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질의일·세무조사 착수일·명단 공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p> <p>○ (좌 동)</p>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회의 소집 분부터 적용

(4)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국기령 §27의5)

— < 법 개정내용(국기법 §47의4③) > —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도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
 - 평가방법 차이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령 §48의2③ 신설)

—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①) > —

- 세무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 대상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 설></p>	<input type="checkbox"/>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신청 허용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국기령 §53⑧, §63의17⑥)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국기령 §53⑭, §6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input type="checkbox"/>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5천만원 미만(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기준 확대 ○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8)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기령 §55의2③신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세무사법」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9) 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국기령 §58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심리자료 사전열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관회의 개최 전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리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처분청에 대한 사전열람 거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심판청구인은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①각하결정 사유, ②소액 심판 사유에 해당시 거부 가능</p>

<개정이유> 조세심판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국기령 §58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통지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통지 방법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통지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11)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국기령 §62의3②③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심판결정서의 송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수령 ○ 우편법에 따른 특별송달* <p>* 등기취급을 전제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공시송달 허용</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송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주심 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심판원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 (효력) 공시한 날부터 14일 경과시 효력 발생

<개정이유> 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12)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국기령 §63의14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 안정성 확보 조치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업무담당자 지정 - 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파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점검 결과 제출	<input type="checkbox"/>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확인 추가 - (좌 동) - 과세정보 이용 업무 담당자의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확인 ○ (좌 동)

<개정이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한 분부터 적용

(13)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국기령 §63의15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법령 관련 국세청장의 유권 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❷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❸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중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청구 사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0억원 → 5억원 ○ (좌 동)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국기령 §65의4⑮)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제4호 상향 입법</p>	<p><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발급 의무 위반시 신고기한</p> <p>○ 의무 위반시부터 5년</p>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5)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국기령 §27의2)

< 법 개정내용(국기법 §47의3) >
<p><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p> <p>○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p> <p>→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p> <p>○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p> <p>*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p> <p>** 조특법 §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p>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징수법 시행령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input type="checkbox"/>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 환급금, 만기환급금 i)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ii) 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iii) 그 외 보험금의 50% i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v) 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i), iv), v)는 합산하여 계산, iii)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input type="checkbox"/> 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input type="checkbox"/>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i) 1천만원 → 1천5백만원 ii) (좌 동) iii) (좌 동) iv) 150만원 → 250만원 v) 150만원 → 250만원 <input type="checkbox"/> 185만원 → 250만원
<input type="checkbox"/>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input type="checkbox"/> (원칙) 총액의 1/2은 압류금지 <input type="checkbox"/> (예외) - 총액의 1/2 < 185만원 : 185만원까지 압류금지 - 총액의 1/2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초과액의 50%* * 월 총급여 600만원 초과분은 1/4만 압류금지 효과	<input type="checkbox"/> 압류 제한 기준금액 인상 <input type="checkbox"/> (좌 동) - 185만원 → 25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영세채납자 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국정령 §5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무서장 및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p> <p>○ (목적) 압류재산의 처분</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대상) 다음 정보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전입세대 - (국토교통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 (대법원) 법인·토지·건물등기 사항증명서 	<p><input type="checkbox"/> 자산관리공사의 공동이용 목적 추가</p>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추가 <p>○ (좌 동)</p>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명확화

(3)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국징령 §60의2)

< 법 개정내용(국징법 §84의2 신설) >

-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 공매 시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대상,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 ○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input type="checkbox"/> 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액납부신청서에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정이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p> <p>○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p> <p>※ 소득금액비율 = $\frac{A(\text{이자·배당소득})}{B(\text{전체 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p> <p>○ (좌 동)</p> <p style="margin-top: 20px;">-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p> <p>*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p>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국조령 §75, §146)

< 법 개정내용(국조법 §36·37·38·89) >

- 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 주체 및 대상정보 용어·범위 정비
- (제공주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법 §2(1)) → 금융거래 법인·단체
 - (대상정보) 금융정보(금융실명법§2(3)) →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자료
- ⇒ 금융거래 법인·단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 법인·단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험회사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추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단체 <p>※ 고시 상향규정 및 범위 조정</p>
<신 설>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국조령 §95)

<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국조령 §97, §99)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p> <p>○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p> <p>*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법 §56①)</p>	<p><input type="checkbox"/>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p> <p>○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p>
<p><input type="checkbox"/>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p> <p>○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p> <p>*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법 §59①)</p>	<p><input type="checkbox"/>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p> <p>○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국조령 §98, §148, 별표)

— <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하는 경우 구체화</p> <p style="margin-left: 20px;">*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p> <p>○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또는 ③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p> <p><input type="checkbox"/> 해외신탁재산 가액</p> <p style="margin-left: 20px;">① 원칙 : 시가</p> <p style="margin-left: 40px;">-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산은 시가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을 시가로 봄</p> <p style="margin-left: 60px;">* 1)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일</p> <p style="margin-left: 20px;">②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p> <p style="margin-left: 40px;">*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 제출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p>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6)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국부펀드의 정의 규정(국조령 §100②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1) >

글로벌최저한세 주요 용어 정의

-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정부기업(국부펀드)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

※ 국부펀드가 최종모기업이 되어 추가세액 부담하는 것 방지('23.2 OECD 행정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정부기업 중 국부펀드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령 §107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6⑤) >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원칙)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시 미포함
 - (특례)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체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고정사업장 손실을 본점에 배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본점의 과세소득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사용된 경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 방법(국조령 §116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9③·④)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 시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①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로 세액계산

②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대상조세에 차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전 사업연도에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후속사업연도 배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 ○ 차감 후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국조령 §118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0⑤2) >

- 적격소재국추가세로서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 적격추가세를 제외한 추가세액 < 0
 - 적격추가세제도가 시행령이 정한 회계기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이나 공인된 현지 회계기준 등을 사용할 것 ②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하거나 많을 것 ③ (운영요건) ①·② 요건 등의 충족여부 평가 시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국조령 §125④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조법 §73④산식) >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보완규칙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p> <p>①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p> <p>②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국조령 §129④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6④) >

-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 취득·처분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할 때 조직재편 특례에 따라 장부가액 사용(과세이연) 원칙
 -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가액의 공정가액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의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사업연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다음 ①,②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차액의 전부를 조정시점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시점 및 이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반영 ○ (조정이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공정가액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국조령 §136④ 신설, §137① 신설)

- < 법 개정내용(국조법 §79⑤·⑥) >
-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요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과세가 예상되는 등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투시과세처리방식 요건 구체화 : ① 또는 ②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 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이익 <input type="checkbox"/>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국조령 §144⑦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87①3) >

신고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과태료 면제 요건(①~⑤ 중 하나 충족)</p> <p>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 당국에 완전히 공개</p> <p>② 신고구성기업이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p> <p>③ 신고서 작성 시의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p> <p>④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⑤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p>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구체화(관세령 §3)

< 법 개정내용(관세법 §12) >

- 신고·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신고·제출한 자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수출·반송신고필증 : 신고·제출 → 보관 ○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 : 신고·제출 생략 → 미보관 <p>* 수출입거래 관련 계약서, 보세운송 관련 자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신고·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신고·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p><input type="checkbox"/>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보관하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②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절차를 마련 ③ 거래내용 등의 검색·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 <p><input type="checkbox"/>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② 자산 취득·양도로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 관련 제출·접수한 서류·판결문 사본 ④ 인가·허가관련 제출·접수한 서류·인·허가증

<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관세령 §17)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p> <p>*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p> <p>○ 적용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p>○ 적용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물품 등 	<p><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명확화</p> <p>○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p>○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물품 등

〈개정이유〉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관세령§65)

현 행	개 정 안
<p>□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p> <p>○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제출거부자: 단일덤핑율 *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p>○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 임의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자료미제출자: 평균덤핑율 *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p>○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 특수관계 없음: 개별덤핑율 * 요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조사 후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p>※ 평균덤핑율 적용 규정은 없으나, 개별 부과 규칙을 통해 적용 중</p>	<p>□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p> <p>○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p>○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없음: 평균덤핑율 -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다만,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 -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다만,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율 <p>*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별도 부령)에서 운용 중인 사항 명확화</p>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

(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관세령 §71의2 신설 등)

— < 법 개정내용(관세법 §56의2 신설) > —

<input type="checkbox"/>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덤핑 정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우회덤핑 조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 - 조사 기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 결정 기한: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 기타절차: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개정이유>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관세령 §97)

< 법 개정내용(관세법 §83①) >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용도세율 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개정이유>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관세령 §141의5)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2) >

-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명단공개 제외사유, 공개내용·기간,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공개내용·기간,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내용)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 ○ (공개기간) 5년(상습범인 경우 10년) ○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의무 세액·과태료·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개정이유>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관세령 §141의11①)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이 출국금지·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천만원 이상 관세채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채납자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 포탈범</p>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①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3①)

—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①) > —

<p><input type="checkbox"/>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p> <p>○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p> <p>○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p> <p style="margin-left: 20px;">*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p> <p>○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p>

<개정이유>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관세령 §141의13②, 별표2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②)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 · 주기 · 기한 등 규정
(관세령 §141의13③~⑥ · ⑪)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⑦)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 전송 요구방법 · 주기 · 기한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 · 주기</p> <p>○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 전송요구 가능</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전송 기한 및 방법</p> <p>○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p> <p>○ 과세정보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전송지연 사실 및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유 해소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p>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방법</p> <p>○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 ·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 철회</p> <p><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관세령 §141의13⑦)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④) >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 납세자의 전송요구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전송거절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은 과세정보 전송거절 및 전송중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에 의해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 ○ 전송요구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⑤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141의13⑧~⑩)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⑨) >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 제공 대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의 방지시스템 구축 ○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시 과세정보 파기 ○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점검결과 관세청에 제출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관세령 §265의3 별표6)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의3①) >

-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를 추가
 - *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등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p> <p>○ 과태료 부과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동의 하에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기타 급부·지원 관련 기관 -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과태료 부과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수 x 50만원'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 한도)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p> <p>○ (좌 동)</p> <p>-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받은 제3자*</p> <p>* 관세사, 세무사, 전기통신사업자 중 관세청이 고시하는 자 등</p> <p>○ (좌 동)</p>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령 §244)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통관보류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세관장에게 국세, 지방세의 강제징수(채납처분)가 위탁된 해당 채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p>-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p>

<개정이유>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관세령 §251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246의2) >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물품'에서 '물품 등'으로 개정하여 대상 확대*

*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p> <p>○ 손실보상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 물품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손실보상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p><input type="checkbox"/>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대상 물품 :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4.3.1.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2)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관세령 §263의3)

< 법 개정내용(관세법 §264의11) >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마약밀수 고위험자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p> <p>○ 외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체포·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정)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p>○ 법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 최근 10년간 마약밀수·유통 범죄로 처벌 받고 강제퇴거 조치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p>○ 식품의약품안전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 받은 자의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정보, 배송경로를 조회한 자의 IP 주소 등

<개정이유> 마약밀수 차단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과세자료 제출요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출입국 심사 자료 ○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부과·징수 자료 등 ○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 경비 배분계산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①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관세령 §265의2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16, §277)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 관련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운송 통로 준수 위반 - 보세운송 기간 준수 위반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4차 위반) 200만원 	<p><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관세령 §265의2 별표5)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

*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4차) 5천만원 ○ 단, 종합보세구역 내 행위에 대한 조치 위반,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차) 400만원

<개정이유> 민간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경제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85의2, §285의3 등)

— < 법 개정내용(관세법 §277, §327의2 등) > —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방식이 아닌 공공기관(관세정보원) 전담체제로 전환

○ 기존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삭제하고, 관세정보원의 설립기준·과징금 기준 등을 규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 <input type="checkbox"/>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기준 등 규정 ○ (지정기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술인력 보유 등 ○ (지정절차) 관세청에 서류 제출 ○ (과징금 기준) 1억원 이하 부과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input type="checkbox"/> 관세정보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4차) 500만원

<개정이유>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

<적용시기> '24.7.1.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타 개정사항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자료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기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출시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세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월 10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자산관리공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 3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농업용 무인항공기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환급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등 ①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② 농선(10톤 이상) ③ 연근해·연안구역 어업용선박, 내수면어업용 선박(10톤이상,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 한정) ④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 소독기, 곡물·농산물건조기 - 등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input type="checkbox"/>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제외대상 확대 ○ (좌 동) - 등유, 액화석유가스 또는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외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의3)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명세 홈페이지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주체) 면세유류 관리 조합 ○ (조합 공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성명 - ② 주소 - ③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 ④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 ⑤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류 관리 조합 및 중앙회 ○ (좌 동) ○ (중앙회 공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합계 - ②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합계 - ③ 면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등 신고 현황 - ④ 석유판매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개정이유>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 공개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및 별표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진단기 등 39종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진단기 → 가축 생체정보수집기* * 체온 등 생체정보를 통한 임신 진단, 분만 알림 등 기능을 갖춘 기자재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3종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환급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다접보온커튼, 농업용 관비기, 농업용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FTA관세령 §46의2 신설)

<법 개정내용(FTA관세법 §35의2 신설)>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 보정기간(관세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대신해 부과되는 금액

- (징수) 기산일(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면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 보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input type="checkbox"/>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하는 이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p>* 年 1천분의 29(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p> <p><input type="checkbox"/> 보정이자 면제사유: 가산세 면제사유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인한 보정신청* * 원산지조사 통지 전 신청,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결과를 미회신 ○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보정이자 부과시 적용 이자율 및 면제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3.1.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FTA관세령 별표3, 별표4, 별표10,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가)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FTA관세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3)	<input type="checkbox"/> FTA협정에 따라 정비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16109000</td> <td>기타</td> <td>4.0</td> </tr> </tbody> </table> <p>*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p>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4.0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16109000</td> <td>기타</td> <td></td> </tr> <tr> <td></td> <td>-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td> <td>0.0</td> </tr> <tr> <td></td> <td>- 기타</td> <td>4.0</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0.0		- 기타	4.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4.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1516109000	기타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0.0																																																														
	- 기타	4.0																																																														
<input type="checkbox"/>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4)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9891030</td> <td>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td> <td>40.0</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40.0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9891030</td> <td>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td> <td>0.0</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0.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40.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09891030	코코넛 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0.0																																																														
<input type="checkbox"/>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별표1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번호</th> <th rowspan="2">품 명</th> <th>세율(%)</th> </tr> <tr> <th>2024년</th> </tr> </thead> <tbody> <tr> <td>0713329000</td> <td>기타</td> <td>0 (666메트릭톤이하) 188 (666메트릭톤초과)</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년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8 (666메트릭톤초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번호</th> <th rowspan="2">품 명</th> <th>세율(%)</th> </tr> <tr> <th>2024년</th> </tr> </thead> <tbody> <tr> <td>0713329000</td> <td>기타</td> <td>0 (666메트릭톤이하) 180 (666메트릭톤초과)</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년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0 (666메트릭톤초과)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년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8 (666메트릭톤초과)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24년																																																														
0713329000	기타	0 (666메트릭톤이하) 180 (666메트릭톤초과)																																																														
<input type="checkbox"/> WTO 양허관세규정(시행령)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세율(별표1의가)	<input type="checkbox"/>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정비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410100000</td> <td>곤충(식용)</td> <td>19.7</td> </tr> <tr> <td>3006930000</td> <td>임상시험 키트</td> <td>6.5</td> </tr> <tr> <td>3822900020</td> <td>기타 인증표준 물질</td> <td>8</td> </tr> <tr> <td>8524115000</td> <td>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td> <td>13</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8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13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번호</th> <th>품 명</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0410100000</td> <td>곤충(식용)</td> <td></td> </tr> <tr> <td></td> <td>- 기타 식용설육(신선·냉장)</td> <td>18.0*</td> </tr> <tr> <td></td> <td>- 기타 식용설육(염장 등)</td> <td>22.5*</td> </tr> <tr> <td></td> <td>- 식용 곤충</td> <td>19.7*</td> </tr> <tr> <td>3006930000</td> <td>임상시험 키트</td> <td></td> </tr> <tr> <td></td> <td>- 설탕과자</td> <td>19.7*</td> </tr> <tr> <td></td> <td>- 기타 조제 식료품</td> <td>54.0*</td> </tr> <tr> <td></td> <td>- 기타 음료</td> <td>26.2*</td> </tr> <tr> <td></td> <td>- 기타 조제절결제</td> <td>6.5</td> </tr> <tr> <td>3822900020</td> <td>기타 인증표준 물질</td> <td></td> </tr> <tr> <td></td> <td>- 뉴스용 필름의 것 등(10개)</td> <td>6.5 등</td> </tr> <tr> <td></td> <td>- 기타(6개)</td> <td>8~50*</td> </tr> <tr> <td>8524115000</td> <td>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td> <td></td> </tr> <tr> <td></td> <td>- LCD가 결합된 표시반</td> <td>0.0</td> </tr> <tr> <td></td> <td>- 기타 액정디바이스</td> <td>13.0*</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 기타 식용설육(신선·냉장)	18.0*		- 기타 식용설육(염장 등)	22.5*		- 식용 곤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 설탕과자	19.7*		- 기타 조제 식료품	54.0*		- 기타 음료	26.2*		- 기타 조제절결제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 뉴스용 필름의 것 등(10개)	6.5 등		- 기타(6개)	8~50*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LCD가 결합된 표시반	0.0		- 기타 액정디바이스	13.0*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8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13																																																														
품목번호	품 명	세율(%)																																																														
0410100000	곤충(식용)																																																															
	- 기타 식용설육(신선·냉장)	18.0*																																																														
	- 기타 식용설육(염장 등)	22.5*																																																														
	- 식용 곤충	19.7*																																																														
3006930000	임상시험 키트																																																															
	- 설탕과자	19.7*																																																														
	- 기타 조제 식료품	54.0*																																																														
	- 기타 음료	26.2*																																																														
	- 기타 조제절결제	6.5																																																														
3822900020	기타 인증표준 물질																																																															
	- 뉴스용 필름의 것 등(10개)	6.5 등																																																														
	- 기타(6개)	8~50*																																																														
852411500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																																																															
	- LCD가 결합된 표시반	0.0																																																														
	- 기타 액정디바이스	13.0*																																																														
	<p>* 실제 적용세율은 관세법 기본세율 8.0% 적용</p>																																																															

〈개정이유〉 FTA 및 WTO 협정의 적정한 이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3, 별표10 및 WTO 양허관세규정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에도 적용

(8)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혜관세 적용 대상 최빈개도국 ○ 부탄*·방글라데시·앙골라·네팔·수단·아이티 등 46개국 * 적용시한 : '23. 12. 12.	<input type="checkbox"/> 적용시한 도래 국가 정비 ○ 부탄 삭제
<input type="checkbox"/> 최빈개도국 대우 종료 예정 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 솔로몬제도 : '24. 12. 12. ○ 앙골라 : '24. 2. 11. ○ 상투메프린시페 : '24. 12. 12. ○ (신 설)	<input type="checkbox"/>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정비 ○ 시한 연장 : '27. 12. 13. ○ 시한 삭제 : 무기한 연장 ○ (좌 동) ○ 방글라데시·라오스·네팔 : '26. 11. 23.

〈개정이유〉 UN의 최빈개도국 대우 연장 결의 등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앙골라) '24. 2. 12.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도 적용